

(앞쪽)

기 간	· · · · · ·	세금우대저축명세서	저 축 기관명	
-----	----------------	-----------	------------	--

※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 관리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

저축명 :

일련 번호	① 가입자 성 명	② 통 장 번 호	③ 주민등록 번 호	④ 통장 개설 연 월 일	⑤ 통 장 해 지 (만기지급) 연 월 일	⑥ 저 축 원 금	⑦ 이 자 · 배 당 지 급 액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2제3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제8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4제7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7조제5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9조의2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출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요령

1. 「저축명」란에는 해당저축명(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세금우대예탁금, 출자금 또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을 기재합니다. 다만, 소액가계저축중 신탁형저축의 경우에는 "소액가계(신탁)저축"으로 기재합니다.
2. 세금우대예탁금(출자금)의 경우에는 조합원(회원)과 준조합원을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합니다.
3. ②의 통장번호란에는 통장번호, 증권번호 또는 등록필증번호를 기재합니다.
4. ④의 통장개설연월일란에는 당해저축통장의 개설일·가입계약일 또는 등록일을 기재하고, ⑤의 통장해지(만기지급)연월일란에는 당해저축통장의 해지일·등록말소일 또는 만기지급일을 각각 기재합니다.
5. ⑥의 저축원금란에는 해당저축의 해지일·등록말소일 또는 만기지급일의 저축원금 잔액을 기재하고, ⑦의 이자·배당지급액란에는 당해저축의 해지일·등록말소일 또는 만기지급일의 이자·배당소득지급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가계생활자금저축의 경우에는 ⑥·⑦란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